

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!

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구로구 소속 이 호 대 의원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

□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장기화된 청년실업과 고비용의 대학원 학자금대출로 인해

부채문제에 직면한 대학원생들은 현행 조례의 이자지원

대상에서 배제되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,

대학원생에게도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청년 부채문제

경감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조례안을

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□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

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도록
규정하고(안 제1조, 제2조, 제3조),

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기간이 졸업 후 최대 5년으로 확대됨에
따라 지원대상도 졸업 후 5년을 경과하지 않는 사람으로
규정하였습니다.(안 제2조제3호)

이에 본 조례의 발의를 통하여,

대학생들의 가계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, 대학생들이 우리
공동체 사회에 건전한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근거
규정을 만들고자 합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

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,
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만장일치로
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